



의안번호	제 2018 - 9호
의 결 연 월 일	2018. 4. 30. (제86차 회의)

의
결
안
건

양형위원회 운영규정
개정 의 건

제 출 자	상임위원
-------	------

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

1. 의결주문

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양형연구회

제32조(양형연구회의 설립·운영) ① 위원회는 양형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·심의에 필요한 기초 조사, 연구자료 수집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기 위하여 양형연구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양형연구회의 조직,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형연구회 회칙으로 정한다.

제33조(운영비의 지원)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형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“제6장 보칙”을 “제7장 보칙”으로, “제32조(운영세칙)”을 “제34조(운영세칙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2. 제안이유

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따른 양형정책 연구·심의기관으로서의 위

상과 역할을 강화하고, 양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원, 검찰, 변호사, 학계 등이 함께 양형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로서 양형연구회를 설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를 신설하여 양형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로서 양형연구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운영규정 제33조에서 양형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형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